

[붙임 3]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내용

장애유형(장애정도)		필기시험	면접시험	
지체 장애	상지 지체	공통	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	
		장애정도가 심한 자	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 · 답안지 대필(선택형 시험)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
하지지체		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	
뇌병변 장애	공통		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	
	장애정도가 심한 자			· 개별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		· 공통 편의지원
시각 장애	공통		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	
	장애 정도가 심한 자	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	· 시험시간 1.7배 연장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 * 의사 진단서 1부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
	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· 시험시간 1.7배 연장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 * 의사 진단서 1부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 * 의사 진단서 1부
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			
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· 공통 편의지원		
청각 장애	공통		· 면접시간 20분내 연장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의사전달보조요원 · 필담면접, 의사전달용 컴퓨터 · 관련자료 서면제공	

장애유형(장애정도)		필기시험	면접시험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	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*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(검토 후 안내)	· 장애정도 검토 후 안내
	임산부	· 높낮이 조절 책상 ·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(의사 소견서 1부)	· 높낮이 전용책상 · 전담도우미 지원

- ※ 「장애인복지법」 시행규칙 기준으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해당 여부 선택
- ※ 증빙자료(의사진단서 등)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3일 전까지 제출
- ※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편의지원 요청내용 검토 후 편의제공 여부 별도안내

**※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**

1. 발급기관 :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
  - ※ 반드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2. 발급일자 :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
3.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  - ①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
  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  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   - 장애유형 및 중·경증 여부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
예시) 점자문제지,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

- “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”

-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